

(3)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한 날짜에 캐나다와 한국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한다.

(4)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 양해각서의 범위안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, 활동수준의 증가에 맞추어 산업, 과학, 기술, 에너지 및 자연자원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. 각 당사국은 동 실무그룹 회합에서 자국 대표의 참여 비용을 부담한다.

제 6 조

각 당사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인원 에 대하여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.

제 7 조

(1)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으로부터 생겨난 비재산적 성질의 정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다.

(2)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 기타 재산적 성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히 배려하며,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제 8 조

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양해각서의 서명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에 체결될 양 당사자간의 협력을 위한 다른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